광주지법, 反FTA 시위 손배소 이색 화해 권고

20명 이상 광주천 10회 자연 정화
5명 이상 불우시설 50회 봉사활동
참석 인원 미달땐 1인당 5만원 배상

법원이 지난 2006년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벌어진 한·미 FTA 저지 시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당시 시위단체와 참가자에게 봉사활동을 골자로 한 이색적인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최근 운동본부 소속 단체와 시위 가담자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광주시에는 소송을 취하하도록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시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공공기관의 청사를 부수고 물의를 일으킨 만큼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벌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운동본부 등 집회를 주도한 단체 회원들과 집회 참가자(소송 당사자) 40명은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로부터 내년 말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 4시간씩 1회당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 광주천 자연정화 활동을 총 10회 실시토록 했다.

또 운동본부 소속 108개 단체 중 2개 단체 이상이 함께 내년 말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4시간씩 1회당 최소 5명 이상이 참석해 장애인시설 등에서 50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참석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달 인원 1인당 5만원씩을 광주시에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운동본부측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1회 운영해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광주시는 집회에 따른 시청 건물 등 피해시설물 복구비용 약 2억2천만원과 부상을 입었던 광주시청 직원들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오는 9일까지 양측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운동본부 측은 "농민·노동자 등 소송 당사자 43명이 광주시의 가압류에 인해 파산 직전에 몰려있는 상태여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2년동안 끌어온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은 운동본부측이 지난 7월 광주시 청사 파손 등에 대해 공식사과하면서 봉합 기미를 보여왔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1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광주·전남 시 도민결의대회 과정에서 시청사 유리창 등을 부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농 광주·전남연맹, 한미 FTA반대 광주·전남희망연대 등 3개 단체와 가담자 40명을 상대로 2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관련자 6명의 재산 2억원을 가압류하고 형사고발까지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주여성들 "송편 빚었어요" 3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향토음식 체험실에서 열린 '절기별 전통음식 체험'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 40명이 자신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맛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프라임그룹 회장 등 5명 출금 조치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백종헌 회장 등 이 회사 임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프라임그룹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키로 했다. 검찰은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프라임그룹 계열사 10곳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장부를 분석중이며 이중에는 상장회사 2군데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는 압수한 프라임그룹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라임그룹 회계 담당자 등 관련자 소환은 기초적인 자료 분석이 끝나는 다음주 중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회사가 짧은 기간에 계열사를 확장해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전날 서울 구의동 프라임그룹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물건 못 받고… 돈 떼이고…

인터넷 직거래 사기 '주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 거래 과정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은 지난 2006년 74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로 박모(22)씨는 지난달 26일 모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 직거래 게시판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곧바로 한 남성으로 전화가 걸어왔고 "고속버스 편으로 물건을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씨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까지 알고 있었던 데다, 인터넷으로 실명까지 확인한 상태여서 의심 없이 노트북을 실어 보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다. 이 남성은 물건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로 송금을 미뤘고 나중에는 전화통화마저 되질 않았다.

결국 박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13명을 모집해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들의 피해품은 대부분 카메라와 노트북 등이었으며 피해액만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백모(45)씨도 지난달 1일 인터넷 모 마켓에서 본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통화 후 수수료를 줄이려고 직거래를 제안했다. 판매자가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밝혔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50만원을 계좌로 보냈지만 다음날 휴대전화는 물론 집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는 드문 사례로, 인터넷으로 실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쉽게 믿을 가능성이 크다"며 "물건이나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을 먼저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현주·강필상기자 ahj@

나원참 〈7595〉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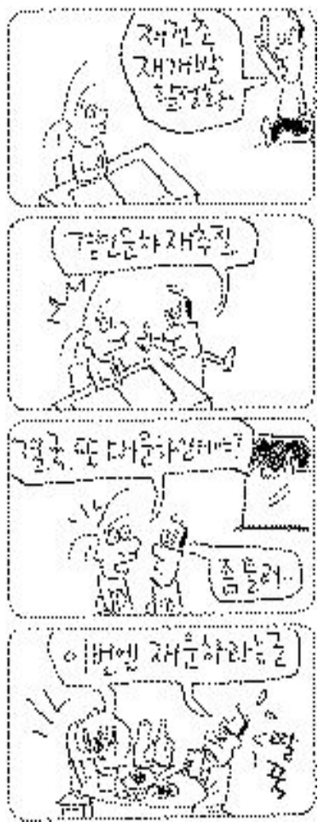

공무원 재혼시 아내에게 연금 상속될까

재결합땐 가능… 제3자와 재혼땐 안돼

전직 공무원 A씨는 15년전 아내와 이혼하고 공무원 퇴직 3년 뒤 다른 여자와 재혼해 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다. 반면 전직 공무원 B씨는 공무원 퇴직 직후 아내와 이혼하고 3년 뒤 전처와 재결합했으나 사망했다.

A씨와 B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온 연금은 누가 상속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A씨와 재혼한 아내는 상속이 불가능하고, B씨의 전처는 상속이 가능하다.

공무원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재결합한 전처의 경우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뒷바라지'를 한 공로가 인정되지만, 재혼한 아내는 공직생활 기간에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으로 보기 힘들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 관계자는 3일 "남편의 공직생활 기간에 아내의 내조를 중요시하는 만큼 퇴직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재결합했을 경우 연금 상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내 한 공무원은 "최근 전남도공무원교육원 강의에서 연금공단 관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듣고 '조강지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 학교 고교생 42명 수련회뒤 식중독 증세

같은 고등학교 학생 42명이 수련회에 다녀온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함평의 A고교 1, 2학년 학생 229명이 신안의 한 청소년 수련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이들 가운데 42명의 학생이 수련회를 다녀온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현재 모든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부터 설사 환자 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는 학생들과 수련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학생들의 가검물을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보험금 타려 26차례 고의 입원

쌍나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년 반 동안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40대 주부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주부 박모(여·48)씨는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광주시 동구 소재 병원 3곳에 26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5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박씨의 입원기간은 총 874일에 달했는데 평소 지병이던 당뇨, 고혈압과 단순 사고 등이 장기입원의 사유였다고.

○…경찰은 "박씨가 31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와는 별도로 건강생활비 200만원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으며, 같은 병명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매번 다른 사유로 입원을 해왔다"고 설명.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